집행기준 44-0-1 —— 합병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,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. • 합병의 종류 A 법인 ＋ A 법인 합병법인 흡수합병 피합병법인 A 법인 ＋ C 법인 합병법인